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역할 강화〉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9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16.
3. 회부연월일 : 2025.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 ⑥ (생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u>발전종합계획안을</u>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⑧ ~ ⑪ (생략)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제10조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전종합계획안을</u> ----- ----- ----- ----- ----- -----.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인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7개 접경지역의 시장·군수, 인천연구원·경기연구원·강원연구원의 원장,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동위원장이 협의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²⁾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시·군의 시장 및 군수
2.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원장
3.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공동위원장이 각각 2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4.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그러나,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당시 2000년 7월 22일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³⁾ 2020년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하는 등 협의회를 통하여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하는 성과가 없는 상황임.

<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개요 >

□ 개요

- (의의)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그 밖에 접경지역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
- (근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조
- (개최실적) 없음

□ 구성 ('20 구성 기준)

- 위원장 : 공동위원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 위 원 : 24명
 - 접경지역 지자체장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강화군, 옹진군 시장·군수
 - 지자체 출연 연구원장 : 인천연구원장, 경기연구원장, 강원연구원장
 - 위원장 추천 :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각 2명)
 - 시·도의회 의장 추천 : 지역개발, 국토계획, 관광, 물류, 환경, 그 밖에 접경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각 1명)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의 범위에서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회의가 열리는 장소의 관할 시·도지사가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3)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2017.10.12.) 회의록 부록 [서면질의·답변서]

※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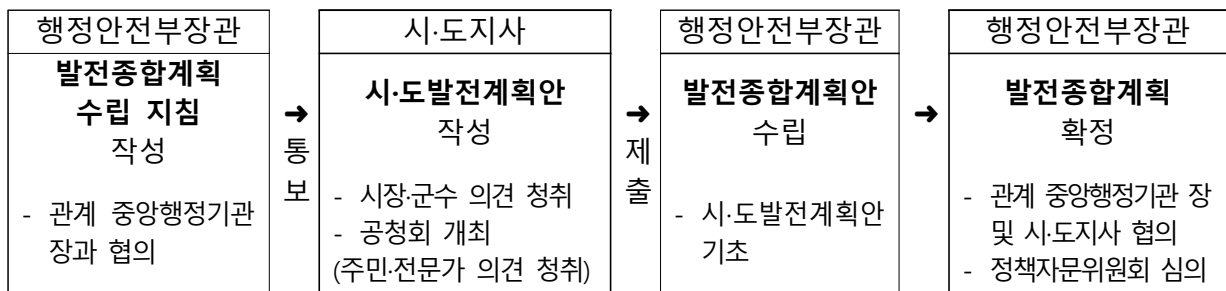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여 다양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정부-지방-민간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발전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작성한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구상으로서,

‘발전종합계획안’의 수립은 시·도지사가 접경지역의 시장·군수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작성·제출한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의 의견이 계획안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고,

구체적인 ‘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협의와 정책자문위원회⁴⁾의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뒤 비로소 확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종합계획안’ 수립시 의견 청취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⁵⁾>



4)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데, 접경지역 관련 정책은 ‘지방자치균형발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해당 분과위원회에는 2025년 현재 행정학, 경제학, 법학 등을 전공한 교수 및 연구원 등 18명이 참여하고 있음.

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시·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⑩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생략)

참고로, 현재 접경지역발전협의회와 유사한 협의회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규약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시장·군수로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며,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⁶⁾

한편,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발전협의회를 연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이견이 없으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시·도발전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시장·군수, 주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50

6) 2025년 3월 20일 진행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평가 및 배분방식,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추가 지원, 군 소음대책 등 15개 안건(건의 13건, 사무국 2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담당부서에 건의하였음.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라 칭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위원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⑥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는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둔다.

제6조(임기) 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반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반기가 끝나는 연도의 6월30일로 한다.

③ 궐위로 인해 선출되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처리사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과 추진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
5.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에 관한 사항
6. 이밖에 협의회 협의의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안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개최하되 상반기는 2~3월중에 하반기는 9~10월중에 지방자

치단체별 윤번제로 개최한다. 다만, 전반기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동시선거 후 첫 번째 회의는 7~8월로, 후반기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회는 5~6월로 변경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협의안을 준비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의결사항 등 각종 회의 관련 자료 원본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한다.

⑥ 지방선거 후 첫 번째 정기회는 사무국을 둔 시군에서 준비하며, 해당 시장·군수가 임시회장이 된다.

제10조(사무처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구성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회의는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협의안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비의 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발주 등 특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비율 공동부담 한다.

제16조(회계) ① 협의회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경리한다.

② 협의회 경리사항은 매년 상반기 정기회시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보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8. 9 >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0. 8. 31>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9. 21>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 6. 18>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